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2. 26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본 조례 부칙에서 유예한 경과기간이 도래하여 사용료 징수 중에 불확정 기한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다시 사용료를 유예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수정내용

안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“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 다음”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“3개월이 경과한”으로 하며

동 조례 제10조관련 별표 중 비고란에 “5.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,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”를 신설

### 3. 수정조례안 : 별첨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“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 다음”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“3개월이 경과한”으로 하며

동 조례 제10조관련 별표 중 비고란에 “5.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,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”를 신설

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 (조례 제 714호)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부 칙(2008. 7. 31)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규정 중 와우산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생략.</p> <p>[별 표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 및 사용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7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망원동 테니스장</td> <td>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</td> <td rowspan="2">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</td> </tr> <tr> <td>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</td> </tr> <tr> <td>2. 와우산 배드민턴장</td> <td>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</td> <td>5. &lt; 신 설 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명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	1. 망원동 테니스장	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	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	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2. 와우산 배드민턴장	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5. < 신 설 >	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----- ----- ----- 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 다음 -----.</p> <p>②현행과 같음.</p> <p>[별 표]</p> <p>현행과 같음</p>	<p>부 칙</p> <p>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개정안과 같음.</p> <p>[별 표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시 설 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 및 사용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7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망원동 테니스장</td> <td>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</td> <td rowspan="2">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</td> </tr> <tr> <td>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</td> </tr> <tr> <td>2. 와우산 배드민턴장</td> <td>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</td> <td>5.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,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명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	1. 망원동 테니스장	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	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	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2. 와우산 배드민턴장	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5.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,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
시 설 명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																				
1. 망원동 테니스장	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	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																				
	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																				
2. 와우산 배드민턴장	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5. < 신 설 >																				
시 설 명	사용료 및 사용시간	비 고																				
1. 망원동 테니스장	전용사용료 (평일 기준) 10,000원/면당	1.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2.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. 단체(10인 이상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학생, 군인은 3할을 감면함 4. 불우소년·소녀, 경로우대자, 어린이,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함																				
	개인연습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																				
2. 와우산 배드민턴장	사용료 (평일 1시간 기준) 2,000원/면당	5.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,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																				